

# 2023년도 제2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8. 14.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김연희, 송수현,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19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432건(안건번호 제2023-128899호~13033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28899호~128903호(순번 1번~5번)는 악보를 게시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제도 취지에 비추어 관리자가 문제제기를 한 바 없는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고, 사안 및 종류나 특징 등을 고려한 시정권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위원회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28904호~128912호(순번 6번~14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28913호~128916호(순번 15번~18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

당함.

안전번호 제2023-128917호~128943호(순번 19번~45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28944호~128946호(순번 46번~48번)는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28947호~130330호(순번 49번~1432번)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36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III.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05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19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건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1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05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457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5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글에서 악보를 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순번 1번~5번은 모두  에 악보를 요청하는 질의글과 이에 대한 답변글로, 악보 전체 분량을 PDF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형태로 게시하고 있음.

순번 1번, 3번, 5번은 합법 사이트에서 현재 판매중이거나, 한때 판매중이었던 악보의 전체 분량을 그대로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어 시정권고로 가결함이 적절함.

순번 2번과 4번은 전체 분량의 악보를 게시하고는 있으나, 직접 채보하였는지 여부 또는 원저작물과의 유사성이나, 현재 합법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악보의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권리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악보 관련 이전 심의 사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5번, 악보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악보 특성상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보고 그대로 연주했을 때 원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악보여야 하는데 지금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리듬과 멜로디 부분만 채보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저 악보 자체가 저작물성이 있다거나 공정 시장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적으로는 전체 부결 의견이지만,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음.
  
- 김선화 선임: 악보를 판매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출판하여 악보집으로 판매하기도 하므로 악보의 합법시장이 없는 것은 아님. 다만,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악보도 비록 신탁관리단체와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신탁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100% 이용허락을 득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됨.

- B 위원: 직접 채보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한지?
- 김선화 선임: (자료를 제시하며)해당 게시물처럼 게시물 내용에 따라 직접 채보한 것이 확인된 경우들이 있음.
- A 위원: 심의 대상 게시물에 올라온 악보들은 완성된 악보라고 보기 힘들. 그리고 대부분은 발매된 지 오래되어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힘들.
- B 위원: 피아노 악보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악보가 아니어도 피아노 악보로 단순하게 편집한 악보집을 구매하여 학습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안과는 달리 봐야할 이유가 있는지?
- A 위원: 클래식곡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출판사에서 이를 목적에 맞게 편집하여 악보집으로 만들었다면 출판사에 저작권이 있는 것이 맞으므로 사안이 다르다고 봐야함.
- B 위원: 권리자가 신고한 것이나 민원인이 제보한 안건의 경우, 사실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가결해 온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악보라고 하여 기준을 달리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함.
- A 위원: 공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임.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권리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직접 신고한 적이 있는지?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 위원: 권리자도 문제 제기하지 않는 사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 김선화 선임: 이제까지의 심의 사례를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 시장이 존재하는 악보를 전체 분량 게시한 경우 시정권고로 가결해 왔음.
- A 위원: 안전으로 올라온 악보의 수준으로는 음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 따라서 이 자체로 해당 곡의 복제물이라거나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이러한 악보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악보 사이트에서 유사한 악보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A 위원: 그렇기는 하나, 그 합법 시장이 규모가 크거나, 최신 영화의 불법복제물처럼 해당 게시물을 당장 시정권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파급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므로, 전체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여 그 이후에 의결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 C 위원: 전체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에 동의함.
- 김선화 위원: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해야 회부가 가능함.
- B 위원, D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5번에 대해 전체위원회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함.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번~1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와 '★★★★'에서 대학 교재 또는 문제집의 스캔 파일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6번 내지 14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출판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 내지 14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5번 내지 18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총 4건임.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5번 내지 18번, 웹하드에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번 내지 18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19번

내지 45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48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9번 내지 45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9번 내지 45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번 내지 48번은 민원인 이 신고한 사안으로, '○○○'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15건임.

해당 저작물은 현재 국내 합법시장에서 유료로 서비스중인 사안으로,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46번 내지 48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6번 내지 48번을 가결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번 내지 1432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36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45번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로, 2023. 5. 3. 개봉하여 현재 디즈니+ 등에서 서비스 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영화 '에스터로이드 시티'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35번은 영화 '에스터로이드 시티'임. 2023. 6. 28.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

안임.

(드라마 '무빙'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84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무빙'임. 2023. 8. 9. 디즈니+를 통해 서비스중인 드라마의 7개 회차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9번부터 1432번까지 총 2,365개의 심의 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소프트웨어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9번 내지 1432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28899호~128903호(순번 1번~5번)에 대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 외 안전번호 제2023-128904호~130330호(순번 6번~1432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0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8. 21.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김연희